

## 1. 들어가며

- 안녕하세요, 이준권 변리사입니다.
- 추운 날씨 속에서 1차 시험을 마무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값진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시험을 치르신 분들마다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점수가 넉넉하게 나온 분들은 2차 시험 준비에 더욱 집중하시면 좋겠고,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변리사 시험은 긴 여정이므로, 최종 목표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이번 디자인보호법 총평에서는 시험의 난이도가 과거와 비교하여 어떠했는지, 어떤 출제 경향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1차 시험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은 향후 학습 방향을 점검하는 데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2. 시험 총평

-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생각됩니다.
- 총 10개의 문제를 분석해보면, 아래의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조문(디자인보호법)에서 대부분의 지문이 출제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판례와 심사기준에서도 출제가 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법조문에서 출제가 아주 많이 되었습니다.
- **법조문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지문은 없었고,** 비교적 정오가 분명한 지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특유한 법조문보다는 총칙 등의 일반 규정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평소 자세히 보지 않았던 지문으로 인해 당황스럽거나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 다행히도, 출제된 조문들이 특허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기에, 특허 법조문을 통해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어렵지 않게 정답을 잘 맞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 제62회 변리사 1차 시험 - 디자인보호법 (총 10문제, 총 50개 지문)

유형 (난이도)	지문 개수	비율(%)
디자인보호법 (중상)	<b>43</b>	<b>86</b>
심사기준 (중)	1	2
판례 (하)	6	12
기타 (중상)	-	-
TOTAL	50	100

### ※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 디자인보호법 (총 10문제, 총 49개 지문)

유형 (난이도)	지문 개수	비율(%)
디자인보호법 (중상)	27	55
심사기준 (중)	11	22
판례 (하)	7	14
기타 (중상)	4	8
TOTAL	49	100

### 3. 앞으로의 공부 방법

- 1차 시험에 있어서 법조문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조문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실 때 법조문을 항상 옆에 두시고 법조문의 표현 자체를 “꼼꼼하게 학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올해는 유난히 정말 유난히 법조문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특유 규정이 아닌 부분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조문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고득점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출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조문은 지엽적인 문제들도 꼼꼼하게 복습해주시길 바라며, 올해 기출되지 않은 다른 파트(디자인보호법 특유 파트)의 경우, 다음 년도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하게 공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학습하시다가 공부 방법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 리 사 1 차 시 험 대 비

j i i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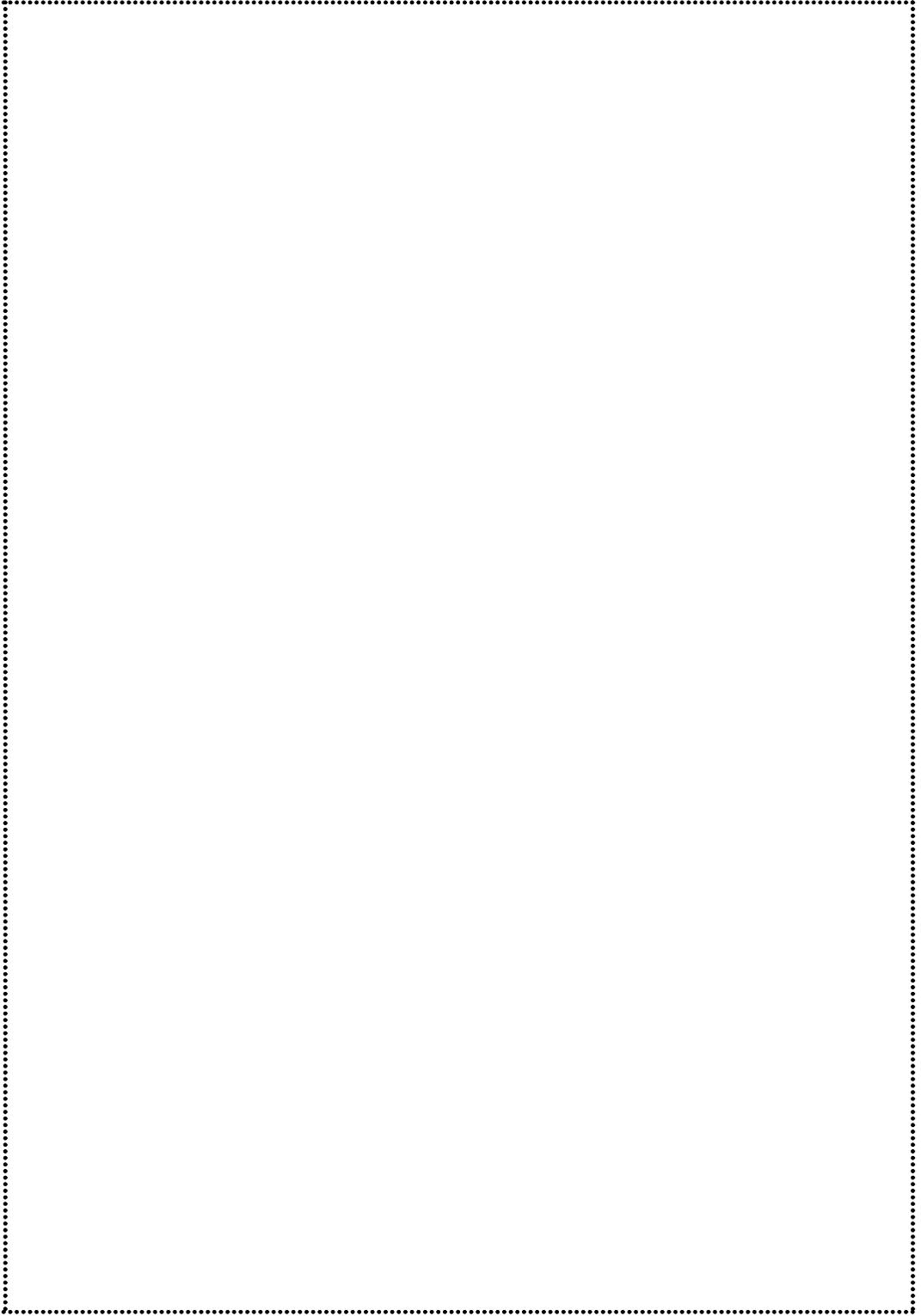
---

**DESIGN LAW**

---

제62회 (2025)  
기 출 문 제

이 준 권



## 2025년도 제62회 디자인보호법 1차

31.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 ②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④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 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 ⑤ 제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❶ [62-01-1] (O)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❷ [62-01-2] (X) [제9조]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❸ [62-01-3] (O) [제10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호)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❹ [62-01-4] (O) [제26조]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❺ [62-01-5] (O) [제15조] 제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3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 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추첨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❶ [62-2-1] (O) [제96조] ①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❷ [62-02-2] (O) [제54조]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❸ [62-02-3] (O) [제57조]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❹ [62-02-4] (O) [제57조]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❺ [62-02-5] (X) [제57조] ②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33.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밀디자인의 청구 후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 ②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비밀디자인) 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43조(비밀디자인)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43조(비밀디자인) 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제43조(비밀디자인) 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p>① [62-03-1] (O) [제43조]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u>철회된 것으로 본다.</u></p> <p>② [62-03-2] (O) [제225조] ②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③ [62-03-3] (O) [제225조] ③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u>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④ [62-03-4] (O) [제113조]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u>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u> (→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입니다)</p> <p>⑤ [62-03-5] (X) [제116조]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u>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 등을 침해했을 경우, 과실의 추정은 배제됩니다)</p>
---

34.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② 글자체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 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창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별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④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서예는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62-04-1] (O) [제94조]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② [62-04-2] (X) [2012후597]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 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창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디자인의 일반적인 유사판단 기준은 글자체디자인의 유사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글자체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창작할 뿐입니다)

③ [62-04-3] (O) [제2조] (제2호)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별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62-04-4] (O) [제94조]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⑤ [62-04-5] (O) [심사기준]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①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글자체는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고,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창작된 서예나, 회사 또는 상품의 이름 등을 표상하기 위한 조립 문자인 로고 타입 등은 성립요건 위반으로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35.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위해 지정한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심사관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경우에 디자인보호법 제 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다.
-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p>① [62-05-1] (X) [제60조] ① 특허청장은 제59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호) 제59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② [62-05-2] (O) [제66조의2]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p> <p>③ [62-05-3] (X) [제62조]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p> <p>④ [62-05-4] (X) [제64조]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⑤ [62-05-5] (X) [제64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p>
---

36. 디자인보호법상 수수료 및 등록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ㄴ) 디자인등록출원 후 3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ㄷ)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납부된 등록료 또는 수수료가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납부한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ㄹ)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ㄹ) 특허심판원장은 심사관이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ㄹ

- ① [62-06-1] (O) [제84조]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 ② [62-06-2] (X) [제87조]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3호)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이 취하 또는 포기된 경우에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주는 규정입니다)
- ③ [62-06-3] (X) [제87조]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④ [62-06-4] (O) [제87조]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호)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 ⑤ [62-06-5] (X) [제86조]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 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제2호)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3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질권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할 수 있다.
-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할 수 있다.
- ④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된다.
- ⑤ 디자인권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① [62-07-1] (O) [제112조]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보는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② [62-07-2] (X) [제109조]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압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압류하여야 한다”입니다)

③ [62-07-3] (X) [제97조]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 중복된 물권적 권리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④ [62-07-4] (X) [제111조]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⑤ [62-07-5] (X) [제110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디자인권이 이전됨에 따라 법정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38.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심판청구인은 심판장의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판관은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 ④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심판관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 ① [62-08-1] (X) [제120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62-08-2] (X) [제128조]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62-08-3] (X) [제157조] ① 심판관은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 ④ [62-08-4] (O) [제142조의2]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62-08-5] (X) [제141조] 심판관이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39.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④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되는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❶ [62-09-1] (O) [2022후10012] (중략)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❷ [62-09-2] (X) [2022후10012] (→ 해당 지문은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❸ [62-09-3] (O) [2016후878]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❹ [62-09-4] (O) [2011후3469]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❺ [62-09-5] (O) [2022후10012] (중략)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위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즉,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40. 디자인보호법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비밀디자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출원공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행사에 대한 제한 조항(제11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❶ [62-10-1] (O) [제179조]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 ❷ [62-10-2] (O) [제184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3조 : 비밀디자인)
- ❸ [62-10-3] (X) [제199조]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 ❹ [62-10-4] (O) [제189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2조 : 출원공개 신청)
- ❺ [62-10-5] (O) [제204조]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3조 제2항 :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 제한 조항)